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3년 8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22 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 안내

세무 및 법률정보

- 2023 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2022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 안내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7.13]

주요내용

주요내용

◆점검 결과를 회사에 개별 통보하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2022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사항(14개 항목)과 비재무사항(5개 항목)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회사에 개별 통보하였음

◦이번 점검으로 2022년 사업보고서 정정공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등은 정보 이용시 유의할 필요

◆중요사항 미흡기재가 확인된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활용할 예정

◦7.20.(목)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미흡사례 및 정기보고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회사의 공시에 나타난 주요 특징* 등 투자자를 위한 유의사항을 꾸준히 안내할 계획

* 소액공모를 이용한 자금조달, 매출액 또는 손익 30% 이상 변경, 대표이사·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경영권 분쟁 등

점검개요

1. 점검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사전 예고 후 점검 실시

◦2022년 사업보고서(12월 결산)를 대상으로는 재무사항 14개와 비재무사항 5개 항목을 중점 점검(붙임1 참고)

점검결과

2. 점검 결과

가. 재무사항

▣(종합 결과) 미흡비율 39.8%(1,163사)로 전년(990사, 36.4%) 대비 3.4%p 상승

▣(시장별) 코넥스(88사, 67.7%), 코스닥(685사, 43.3%), 비상장(195사, 42.4%), 유가증권(195사, 26.1%) 順으로 미흡비율이 높았음

▣(주요 미흡항목) ①회계감사인 명칭·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14.1%), ②회계감사인의 변경(9.7%), ③재고자산 현황(7.6%) 등

□(점검 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12월 결산, '22년말 기준) 총 2,919사*를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

* 주권상장법인 2,459사(유가 747사, 코스닥 1,582사, 코넥스 130사) 및 비상장법인 460사

◦ '23.2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예고한 14개 항목을 중점 점검

□(종합 결과) 2,919사 중 1,163사(39.8%)의 사업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미흡비율이 전년(990사, 36.4%) 대비 3.4%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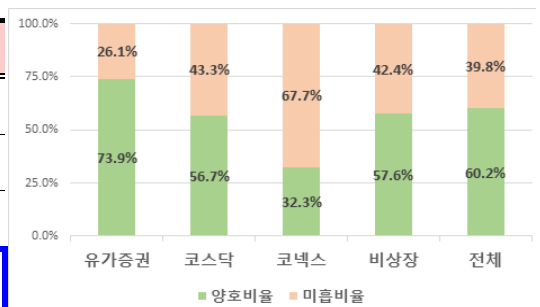
◦이는 점검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11개→14개)이며, 신규 항목을 제외한 미흡회사는 총 981사(33.6%)로 전년 대비 2.8%p 하락한 수준

* 14개 점검 항목 중에서 1개 항목이라도 미흡하면 미흡회사로 집계함

□(시장별) 시장별 미흡비율은 코넥스(88사, 67.7%), 코스닥(685사, 43.3%), 비상장(195사, 42.4%), 유가증권(195사, 26.1%) 順

시장별 미흡회사 현황

구분	유가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전체
점검대상	747	1,582	130	460	2,919
양호회사	552	897	42	265	1,756
미흡회사	195	685	88	195	1,163
미흡비율	26.1	43.3	67.7	42.4	39.8



□(주요 미흡항목) ①회계감사인 명칭·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14.1%), ②회계감사인의 변경(9.7%), ③재고자산 현황(7.6%) 順

- ①강조사항 미흡회사 증가('21년 6사 → '22년 202사)가 주요 원인
 - 대부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누락
 -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미흡회사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공시내역의 특징을 추가 확인하였음 (「재무사항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4p)」 참고)

- ②회계감사인의 변경 관련 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점검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미흡회사는 283사로 확인
 - 실질 미흡비율*은 30.7%로 모든 점검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
 - *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이 변경된 922사 기준으로 한 미흡비율

- ③재고자산 현황 미흡회사는 전년 대비 93사 증가('21년 129사 → '22년 222사)하여 미흡비율이 2.9%p 상승
 -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회사의 최근 3개년('20~'23.6월) 공시* 확인 결과,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
 - 소액공모, 손익 30% 이상 변경, 대표이사·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분쟁 등 공시가 1개 이상(평균 2.7개) 발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미흡회사의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비고
발행공시	소액공모* 1회 이상	최대 3회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1회 이상	최대 3회
	대표이사 변경 1회 이상	최대 6회
	최대주주 변경 1회 이상	최대 4회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제기 1회 이상	-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모(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로서, 최소한의 공시의무만 이행하고 신속한 자금조달 가능

** 영업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

< 재무사항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

- ①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사보고서를 확인하여 감사의견 변형 여부, 계속기업 불확실성 포함 여부를 살펴볼 필요
- ②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회사의 매출액을 포함한 손익구조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지,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은지 등을 살펴볼 필요
 - * 사업보고서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③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하여 정기보고서 외의 공시서류를 검색하여 발행공시, 주요사항공시 및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
- ④ 이번 점검 결과로 2022 년 사업보고서 정정공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공시서류를 확인하여 정정사항 등을 살펴볼 필요

나. 비재무사항

□(점검 대상)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이하 'MD&A') 공시의 적정성 점검을 위해 상장법인 120 개사(유가 60, 코스닥 60)를 선정*하여

* '22 년말 기준 시가총액 100 위 내 상장법인 중 최근 MD&A 미점검회사와 횡령·배임, 최대주주 잦은 변경 등 중요사항 발생 회사를 감안

◦ 6 개 세부 기재항목 중 '예측정보 주의사항'을 제외한 5 개 항목에 대해 작성기준 준수 여부 및 충실도 평가

* □ MD&A 개요, □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 부외거래, □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점검 결과) 점검 대상 120 사 중 양호 이상은 총 25 사(21%)인 반면, 미흡 이하는 총 43 사(36%)로 전체적인 기재수준은 미흡

◦ 상장시장별로 양호 이상인 회사가 유가는 23 사로 많았으나, 코스닥은 2 사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미흡

◦ 규모별(시가총액 기준)로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향을 보임

* 양호 이상이 5 조 이상은 9 사, 1 조 미만은 1 사

◦ 항목별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의 기재가 가장 양호했으나, 변동원인 분석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미흡

- 특히, 재무제표 이외의 중요사항이나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부외거래'나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 필요사항'에 해당 내용을 누락하거나 참조 표시한 사례 다수

【평가 결과】

구 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합계	평균
전 체 (비중)	8 (7)	17 (14)	52 (43)	40 (33)	3 (3)	120 (100)	49.3
유가	7	16	25	12	0	60	57.6
코스닥	1	1	27	28	3	60	40.9

【규모별 평가 결과】

구 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합계	평균
5 조 이상	4	5	10	4		23	59.0
5 조 미만	2	6	14	4		26	57.2
3 조 미만	2	5	17	15		39	48.1
1 조 미만		1	11	17	3	32	37.4
합 계	8	17	52	40	3	120	49.3

< 비재무사항 작성 관련 당부사항 >

- ① 대부분 경영실적을 수치 증감 위주로 작성하는 실정으로 MD&A 의 취지에 맞게 회사의 현 상황과 미래 예측 정보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경영진의 인식 제고가 선행될 필요
- ②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문에 기재한 내용일지라도 MD&A 작성기준에 포함된 내용은 누락 없이 반드시 기재할 필요
- ③ 공시정보 이용자가 MD&A 내용을 통해 회사의 중요 사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소 수시공시 사항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기재할 필요

향후계획

3. 향후 계획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 반영) 재무제표 표본심사 대상 선정*을 위한 위험요소**중 하나로 강조사항 미흡회사를 추가할 예정

*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재무제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외감규정」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 무작위 표본추출 대상 모집단 선정기준으로, 회계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의미함

□(설명회 개최)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공시설명회」를 개최*

* 일시 : '23.7.20.(목) 15:00~17:00, 장소 : 금융감독원 본원 대강당(붙임 2 참고)

2023년 8월호

◦ '22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붙임 3 참고)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

◦ 아울러, 평소 공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공시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

* '신사업 추진경과 공시 의무화(6.30. 시행)' 관련 개정내용 및 중점점검 계획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23.8.17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8.18 부터 3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지방세기본법]

1. 외국법인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 확대(안 법547)

'현 행	개 정 안
<p>□ 출자자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p> <p>○ 법인의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출자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p> <p>- 다음 각 호 해당 시 법인이 출자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p>	<p>□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확대</p> <p>○ (좌 동)</p>
<p>1.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을 때</p> <p>2. 법률 등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 제한시</p> <p>3. (신 설)</p>	<p>1.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을 때</p> <p>2. 법률 등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 제한시</p> <p>3. 외국법인의 출자자(과점주주 등) 소유주식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 제한 시</p>

<개정이유> 외국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외국법인을 활용한 출자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 합리화(안 법54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업양도인 체납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input type="checkbox"/>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확대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 중 일부'*만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인수한 자

<개정이유>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 중 일부'*만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①양도인과 특수관계인, ②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인수한 자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법]

3.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규정 개선(안 법 §10 조의 3, §22 조의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취득세 과세표준을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여 신탁수수료 포함 여부가 불분명 ※ 신탁수수료는 신탁의 대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건설과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등)과 아닌 부분(분양 보수 등)이 혼재	<input type="checkbox"/>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소요한 비용 포함)으로 규정* * 이 경우 물건의 취득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포함(건설과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등)

<개정이유>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투입한 비용 포함)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지방소득세세법]

4.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법§103 의 23, 법§103 의 3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input type="radio"/> 분할납부 제도 없음 (납부기한 내 전액 일시 납부)	<input type="checkbox"/>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input type="radio"/> <u>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 가능</u> (중소기업은 2개월)

<개정이유> 일시 납부에 따른 영세법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활력 제고

<적용시기>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 감경(안 법§103 의 2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안분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u>무신고가산세</u> 부과 <input type="radio"/> 납부할 세액의 <u>20%</u>	<input type="checkbox"/> 안분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u>가산세율 경감</u> <input type="radio"/> 납부할 세액의 <u>10%</u>

<개정이유> 가산세율을 경감하여 과도한 행정제재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6. 법인 적격분할의 감면제외 대상 명확화(안 법§57 의 2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재산 취득시 감면 <input type="radio"/>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이 부인되는 사업 감면 배제 <input type="radio"/> 부동산 임대사업 부문 등을 적격분할에서 제외 명확화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 제도 합리성 및 조세 특례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및 재설계(안 법\$58①~③, \$78⑨)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분양·임대 부동산 감면(\$58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50% ○ (대상) 분양·임대 부동산 ○ 일몰기한 : '23.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재산세* 35%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 60% ○ 분양·임대·<u>직접사용</u> 부동산 ○ 일몰기한 : '26.12.31.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부동산 특례(\$58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대도시 종과세 배제 ○ 일몰기한 : '23.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재설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집적시설) 재설계 취득세·재산세* 50%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 60% ○ (산업기술단지) 취득세 등 감면 규정 (법 제78조)으로 이관 ○ 일몰기한 : '26.12.31. (산업기술단지는 '25.12.31.)
<input type="checkbox"/>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 건축물 감면(\$58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재산세(3년) 50% ○ 일몰기한 : '23.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재산세*(3년) 50%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3년) 60% ○ 일몰기한 : '26.12.3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58 의 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 감면 (§58의3①②) <input type="checkbox"/> 취득세 75%, 재산세 100%(3년) + 50%(2년)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 '23.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제외대상 (§58의3⑥) <input type="checkbox"/> 포괄적*으로 규정 *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 '26.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시행령 위임 근거 마련,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개인이 추가로 동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의 조기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안 법§79 의 2)

'현 행	개 정 안
<신설>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부동산 감면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자 - '24.1.1.~'26.12.31.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input type="checkbox"/> 감면 요건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해외 사업장 폐쇄·양도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하여 동일 업종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75%(5년) * (취득세) 조례로 50%p 추가 可

<개정이유>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퇴직위로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서면-2023-원천-0640, 2023.07.27)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3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자체 연금지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계획 중임.
- 정년퇴직자가 법정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로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소득을 지급하여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질의요지)

- (질의1)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명목의 퇴직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2) 위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의 소득구분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세법해석에 따라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기 바람.

위와 같은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과세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임원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공제 승계 여부 (사전-2023-법규소득-0267, 2023.06.22)

(사실관계)

- 질의인은 ○○○ 소재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함.
- 질의인은 '21.1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유형의 사업을 개업함.

(질의요지)

- 거주자가 특정한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을 사업을 양도한 거주자의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의 특정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및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더라도 같은 법 제2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소득공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08.02)

(질의요지)

-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제1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됨.
- <제2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 2020.11.02)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일본계 자회사인 일본법인은 IT솔루션 컨설팅,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은 없음.
- 일본법인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의 재판매 권리를 취득하여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 가상화된 서버, 저장장치(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데이터센터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IaaS**에 해당함.

*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클라우드컴퓨팅법 §2①)

**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데이터센터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3①)로서 주로 기업들이 이용함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